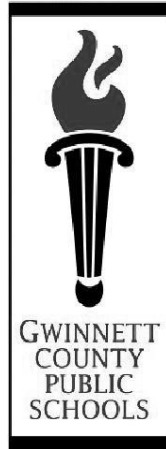


부모로서의 권리

IDEA 2004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GCPS”)

특수 교육 및 심리 서비스

Dr. Nicole White

수석 책임자

2024 년 8월

부모 멘토

GCPS의 부모 멘토는 귀넷 카운티 교육구의 전문적인 직원입니다. 부모 멘토는 부모, 관리자, 교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장애 학생이 더 큰 성공과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부모 멘토는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정이 솔루션을 찾고 자녀의 학교와 협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 멘토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분들로 가족이 겪는 일들을 잘 이해합니다. 부모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특수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Dawn Albanese, 부모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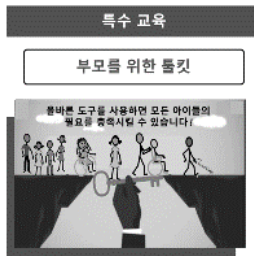
Dawn.Albanese@gcpsk12.org

678-301-7212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 학부모 멘토 파트너십 (GaPMP) 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GaPMP 의 목적은 가족, 교직원 및 커뮤니티 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최상의 발전을 기하고 가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학부모 툴 키트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학생들의 가족에게 추가 도움이 되는 것은 학부모 툴 키트입니다. 툴 키트에 접속하려면 아래의 QR 코드를 사용하세요.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1 / 39

부모로서의 권리 - 특수 교육 관련

장애 학생 교육과 관련된 연방법률인 장애인교육법[IDEA, 미국연방기준집(C.F.R.) 34 300절 참조]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게 IDEA 및 미국 교육부 규정에 따른 절차적 보호에 대해 설명하는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

“지역 교육 기관(LEA)”, “공공 기관”, “기관”, “지역 시스템”, 혹은 “시스템” 등의 용어는 공립 비영리 차터 스쿨을 포함해 해당되는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지아주에 의해 지정된 학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부모” 라는 용어는 IDE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의미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혹은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 양부모, 아이에 대한 교육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가된 후견인, 생물학적 혹은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조부모, 의붓부모 및 기타 친척 포함), 아이의 복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지정된 대리 부모를 포함합니다. [미국연방기준집(C.F.R.) 34 300절 30]]

본 통지문의 사본은 부모에게 한 학년도에 한 번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의 평가 의뢰 혹은 학부모의 평가 요청 시, (2)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최초의 공식 불만 서한 접수 시, (3) 학년도 중 학생이 소속한 학교 시스템과 관련하여 최초의 적법 절차 불만 접수 시, (4) 반의 재배치를 포함한 징계 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5) 최초로 학생 혹은 부모의 정부 보조 혹은 보험 정보에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2 / 39

접근하기 이전, (6) 학부모의 요청 시. [미국연방기준집(C.F.R.) 34 300절 504(a)]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의뢰된 학생 혹은 이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로서, 부모 및 자녀는 주법 또는 연방법, 혹은 이 둘 모두에 의해 보호받는 특정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 몇 페이지에 걸쳐 개괄적으로 서술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언어로 된 설명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학교 혹은 학교 시스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자녀가 IDEA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기타 개인식별정보는 비밀이 유지되며, 정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 내에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 및 단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밀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1)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1974, “FERPA”), 미국연방기준집(C.F.R.) 34 99편을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특정 상황 및 (2) IDEA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에게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 공개에 대한 동의를 보류함으로써 제3자의 자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권리.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 / 39

2. 자녀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관련 기관의 공무원에게 자녀의 개인식별정보 공개를 제한할 권리.
3. 거주하는 지역의 LEA에 위치하지 않은 사립 학교에 자녀의 개인식별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권리.
4. 자녀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파기되기 전 이에 대한 통지와 그 사본을 받을 권리.
5. 정보가 누구에게 공개되는지 통지받을 권리.
6. 자녀가 등록하고자 하는 혹은 등록할 자격이 있는 다른 기관에 전송된 모든 정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본을 받을 권리

기록:

“교육 기록”은 FERPA의 “교육 기록” 정의에서 다뤄진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육 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의미합니다.

- (1) 학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록 및
- (2) 교육 기관이나 시설, 또는 이를 대행하는 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

교육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기록자 본인만이 소유하는 기록, 기억 상의 도움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기록, 기록자의 임시 대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기록.
- (2) 조항 99절 8에 영향을 받는 교육 기관의 법률 집행부의 기록.
- (3) 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고용된 개인과 관련되어 정상적인 업무 중 생성되거나 유지된 기록, 특정 개인의 직원으로서 역량에만 관련된 기록,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 기록. 그러나,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고용되어 출근하는 개인과 관련된 기록은 교육 기록에 해당됩니다.
- (4) 18세 이상의 학생 혹은 고등교육 과정 이후 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과 관련하여 전문 역량을 수행 중인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혹은 공인된 전문직 및 준전문 직원에 의해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기록, 혹은 학생의 치료와 관련해서만 생성, 유지 및 사용되는 기록,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만 공개되는 기록. 해당 정의의 목적과 관련하여, “치료”는 교정 교육 활동 또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수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개인이 더 이상 등교하는 학생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학생의 등교와 관련이 없는 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의해 생성되거나 접수된 기록.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5 / 39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 교육 프로그램(“IEP”)과 관련된 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문회, 또는 해결 세션 이전에 그리고 요청 후 45일 이내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점검하고 검수할 권리.
2. 부모의 대리인이 기록을 검수할 권리.
3. 기록에 대한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기록을 점검하고 검수할 권리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공공 기관에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
4. 주법에 의해 부모에게 권한이 없다는 통지를 공공 기관이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으로부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고 검수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될 권리.
5. 교육 기록이 두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자녀에 관련된 정보만 점검하고 검수할 권리.
6. IDEA에 의거해 수집, 유지, 사용된 교육 기록에 포함된 자녀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부모 및 관련 기관의 허가된 직원에 의한 접근은 제외함)을 가진 당사자에 대한 기록을 공공 기관이 보유하도록 할 권리. 이 기록은 당사자의 이름, 접근이 이루어진 날짜, 당사자가 기록을 사용하도록 허가된 목적을 포함합니다.
7. 비용에 대한 청구 없이 공공 기관이 교육 기록을 검색하게 할 권리.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6 / 39

8. 비용이 이러한 기록을 점검하고 검수하는 권리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경우, 사본에 대한 비용만을 청구 받을 권리.
9. 기관에 의해 수집, 유지, 사용되는 기록에 대한 모든 종류 및 위치와 관련해 통지받을 권리.
10. 기록의 모든 항목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할 권리.
11.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혹은 다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권리.
12.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뒤 상식적인 시간 내 정보 수정의 여부를 기관이 결정하게 할 권리.
13. 수정 요청을 기관이 거부할 경우 기록 수정 거부 사실 및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
14. 기관이 청문회에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경우, 서면 상으로 통지를 받고 기록을 수정 받을 권리.
15. 정보에 대한 주석 표기에 의견을 포함시킬 권리 혹은 청문회에서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기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할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
16.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유지되는 동안 부모의 설명이 기록에 유지될 권리 및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공개된 경우 설명도 공개될 권리.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7 / 39

독립 교육 평가:

“독립 교육 평가” 는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교육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적격 조사관이 시행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공 비용” 이란 학교 시스템이 평가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평가로 인해 부모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주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주, 지역, 연방 및 사적 차원의 지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IDEA의 규정에 따릅니다. [미국연방기준집(C.F.R.) 34 300절 502(a)(3)(i - ii)]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학교 시스템이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부모는 공공 비용 부담으로 자녀에 대한 오직 한 번의 독립 교육 평가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공공 비용 부담으로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학교 시스템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청문회를 요청하기 위한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해 자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거나, 또는 (2) 부모가 받은 자녀의 평가가 학교 시스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학교 시스템이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비용을 사용하여 독립 교육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 시스템이 청문회를 요청하고 행정법판사(“ALJ”) 혹은 청문관의 최종 판결이 자녀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평가가 정당하다는 내용일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공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학교 시스템은 학교 시스템에 의한 자녀의 평가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8 / 39

그러나, 학교 시스템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 비용을 사용한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 제공 혹은 자녀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적법 절차 청문회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적격 조사관에 의해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
2. 공공 비용 또는 사적 비용을 사용하고, 학교 시스템 기준에 맞으며, (1)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과 관련해 배치 혹은 프로그램 결정 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고, (2)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
3. 독립 교육 평가가 비용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 및 평가를 위한 학교 시스템의 적용 가능한 기준에 대해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통지받을 권리.
4. 기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 장소 및 조사관의 승인 조건을 포함해 평가가 시행된 공공 기관에서 사용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공 비용을 사용하여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 이는 공공 기관이 시행한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FAPE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5. 청문회 도중 ALJ 혹은 청문관에 의해 평가가 요청된 경우 공공 비용을 사용하여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

통지문:

“통지문”이란 부모에게 제공된 서면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제안된 평가, 회의, 및/또는 프로그램의 변경 혹은 적격성 또는 식별, 평가 및 IDEA에 의거해 장애 학생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다른 정보를 포함합니다. 서면 통지문은 변경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공됩니다.

통지문과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학교 시스템이 식별, 평가, 배치 혹은 자녀를 위해 FAPE의 제공을 개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혹은 개시나 변경을 거부하기 전에) 이에 대해 통지받고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
2. 부모의 모국어 혹은 기타 주요 소통 수단을 통해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면 통지문을 받을 권리.
3. 모국어 혹은 다른 소통 수단이 문자 언어가 아닐 경우, 이러한 통지문을 음성으로 통역하거나 모국어의 다른 수단 또는 다른 소통 수단으로 번역하여 전달 받을 권리.
4. 통지문이 제안된 활동을 설명하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학교 시스템이 고려한 선택지를 설명하고, 다른 선택지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권리.
5. 학교 시스템이 제안한 모든 행동 또는 모든 거절의 근거로 삼은 각 평가 절차, 시험, 평가, 기록, 혹은 보고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6. 기관이 제안한 행동이나 거절의 근거와 관련된 기타 다른 요소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
7.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적 보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는 통지문에 대한 권리.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10 / 39

8. IDEA의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9. 학교 시스템이 자녀 혹은 부모의 정부 보조 혹은 보험 정보에 최초로 접근하기 이전에, 그리고 일회성 및 그 이후 매년 부모 동의를 받기 전에 통지받을 권리.
10. 기관이 식별, 평가, 배치 혹은 자녀를 위해 FAPE의 제공을 개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또는 개시나 변경을 거부하기 전에 위의 항목 2부터 8까지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 사전 서면 통지문을 받을 권리.
11. (1) 상호 동의할 만한 시간 및 장소에서 회의를 가질 권리, (2)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3)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지식 혹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동반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IEP 팀 회의에 참석할 권리.
12. 학교 시스템 안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 모든 통지문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는 사전 서면 통지문, 절차적 보호(부모의 권리) 통지문, 적법 절차 불만 관련 통지문을 포함합니다.

동의:

“동의”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동의하려는 행위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모국어 또는 다른 소통 수단(예: 수화, 점자,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습득한 상태.

2. 그 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그 동의가 행위를 설명하고 (만일 있는 경우) 공개될 기록 목록 및 기록의 공개 대상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3. 동의는 자발적 행위이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동의 철회는 동의를 제공한 이후 및 동의를 철회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동 의와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가 IDEA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최초의 평가 이전에 동의를 할 권리. 또한, 제안된 행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문을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a.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학교 시스템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재 혹은 적법 절차 청문회 절차를 통해 최초 평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b.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는 IDEA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 c. 부모가 동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공공 기관이 평가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장애 아동 찾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동의를 제공할 권리. 해당 학교 시스템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이 권리는 제외됩니다. (1)

학교 시스템이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단계를 거쳤으며, **그리고** (2)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 a.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학교 시스템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재 혹은 적법 절차 청문회 절차를 통해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를 무효로 하고 재평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b. 최초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거부할 경우 학교 시스템은 IDE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의 부모이거나 부모의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배치된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 혹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러한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을 경우, 동의를 얻기 위한 중재 혹은 적법 절차 청문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
- a. 공공 기관은 해당 학생의 서비스 자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특수 교육에서 최초로 반 배치를 받기 전에 동의를 제공할 권리. 학교 시스템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개시를 위한 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a. 만약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개시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동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학교 시스템은 그 동의를 얻기 위해 중재 혹은 적법 절차 청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13 / 39

- b.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 시스템은 장애 아동 찾기 책임이나 자녀의 FAPE 이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 c. 학교 시스템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제공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IEP 팀 회의를 소집하거나 IEP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학교 시스템이 자녀 혹은 부모의 정부 보조 혹은 보험 정보에 최초로 접근하기 전에 일회성 서면 동의를 할 권리. 또한 학교 시스템이 자녀 혹은 부모의 정부 보조 혹은 보험 정보에 최초로 접근하려고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에 대한 서면 통지문을 받을 권리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6.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 최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이후 언제든지 부모가 서면으로 자녀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학교 시스템은 다음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a.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 중단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b. 동의를 얻기 위해 중재 혹은 적법 절차 청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학교 시스템은 FAPE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14 / 39

- d. 향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IEP 팀 회의를 소집하거나 IEP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e. 자녀가 받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리를 폐기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 평가 혹은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점검하기 전에, 혹은 모든 학생에게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IDEA 규정은 주 불만 제기 및 적법 절차 불만과 청문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제시합니다. 모든 분쟁 해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묘사는 주 위원회 규칙 160-4-7.12 분쟁 처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두 불만 절차 모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불만 절차

모든 개인 및 기관은 학교 시스템, 주 교육 기관(“SEA”) 및 기타 다른 공공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IDEA 요구 사항 위반에 대해 공식 서면 주 불만(State complaint, “주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불만 기간이 적절하게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의 기간 내에 SEA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 불만: 불만은 서명되고, IDEA의 위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불만에는 지역 시스템이 IDEA의 요구 사항을 위반했음과 불만의 원인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은 접수된 날짜로부터 **일(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합니다.

1. 그 어느 때라도 주 불만이 제기되면,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중재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2. 주 불만은 조지아주 교육부(GaDOE) 혹은 그 계약자에 의해 조사됩니다. 불만 제기 당사자 및 관련 공공 기관 모두 조사 중에 조지아주 교육부에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정상참작이 되는 상황에서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불만에 대한 결정은 조지아주 교육부에 의해 달력상 기준 6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4. 주 불만에 대한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절차

부모, 법적 성인 연령에 도달한 장애 학생, 혹은 학교 시스템만이 식별, 평가, 장애 학생의 교육 상의 배치, 혹은 학생에 대한 FAPE의 제공을 개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제안 혹은 거절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에 대해,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관은 불만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해결을 위한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본 문서의 “해결 과정” 에서 설명된 바에 따라 처리 기간 종료 후 달력상 기준 45일 이내에 서면 결정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부모 혹은 학교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청문관이 구체적인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적법 절차 불만: 불만 당사자가 불만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밖에 없었던 때로부터 **이(2)** 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만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은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불만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교 시스템이 불만에서 인지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명확하게 잘못 전했을 경우, 혹은 (2) 학교 시스템이 IDEA의 B편에 의거하여 불만 당사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불만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1. **적법 절차 불만에 대해 통지할 책임.** IDEA에 따라 적법 절차의 위반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학교, 혹은 그의 변호사는 적법 절차 불만을 다른 당사자(혹은 그의 변호사) 및 조지아주 교육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해당 학생의 이름과 집 주소,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명, 거주지가 없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연락처 정보와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명,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및 제안하려는 해결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적법 절차 불만에서 다루는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한 통지할 책임.** 만약 학교 시스템이 학부모의 적법 절차 불만에 대한 통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시스템은 불만을 접수한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청문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a. AU 혹은 청문관은 해당 통지의 IDEA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최대 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면 AU 혹은 청문관은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AU 혹은 청문관이 불만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적법 절차 불만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AU 혹은 청문관이 불만에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학부모는 새로운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17 / 39

불만을 다시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3. **적법 절차 불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적법 절차 불만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학교 시스템은 우선 적법 절차 불만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 시스템은 적법 절차 불만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기관이 적법 절차 불만에서 제기된 행위를 제안하거나 거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
 - b.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선택지 및 이러한 선택지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 c. 기관이 제안되거나 거절된 행위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보고에 대한 설명
 - d. 학교 시스템의 제안 또는 거절의 관련 요소에 대한 설명.
4. **해결 세션.** 불만이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결 세션을 소집해야 합니다. 해결 세션은 학부모와 학교 시스템에게 적법 절차 불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학교 시스템이 적법 절차 청문회를 거치지 않게 하고 학생에게 그 즉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해결 세션을 열어야 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중재 과정을 거치기로

동의하거나 양자가 해결 세션 및 중재의 포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a. 학교 시스템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학교 시스템의 대표가 반드시 세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 b.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시스템은 변호사를 세션에 대동할 수 없습니다.
 - c. 세션은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만 및 불만의 근거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응답 당사자에게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d. 만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학부모 및 학교 시스템의 대표에 의해 서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 e. 이러한 합의는 모든 주 법원이나 이에 준하는 관할권 혹은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합의 이후 최대 삼(3) 일간은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f. 만약 적법 절차 불만이 불만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해결 세션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적법 절차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 적법 절차 불만이 제출되면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조지아주 교육부 혹은 조지아주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한 공정한 대리인이 진행하는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비용은 양 당사자에게 청구되지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19 / 39

않습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법률 자문가 혹은 전문가 증인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이 승소 당사자에게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와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교육에 관련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 혹은 전문적으로 청문회에 연루된 공공 기관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ALJ 혹은 청문관에게 청문을 주재 받을 권리(ALJ 혹은 청문관은 ALJ 혹은 청문관의 역할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LJ 혹은 청문관의 역할을 하는 각 개인의 자격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목록을 볼 권리.
3. 법률 자문가 및 장애 학생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이 가졌거나 훈련을 거친 개인을 청문회에 대동하고 조언을 얻을 권리.
4. 부모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부모 혹은 학교 시스템이 적법 절차 불만을 개시했을 때, 모든 무료 혹은 저비용 법률 및 기타 다른 관련 이용 가능 서비스(예를 들면 청문회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장애 상태 전문가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받을 권리.
5. 장애의 징후와 관련하여 적법 절차 불만을 제출했을 때 신속하게 적법 절차 청문회를 열 권리.
6. 자녀를 청문회에 참여시킬 권리.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20 / 39

7. 청문회를 대중에 공개할 권리.
8.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참석한 증인에게 질문하고, 반대 심문하고, 이들을 강제할 권리.
9. 청문회 혹은 항소가 부모 및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할 권리.
10. 최소한 청문회가 열리기 영업일 기준 오(5) 일 이전에, 모든 다른 당사자로부터 그 날짜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 및 청문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권고를 받을 권리.
11. AU 혹은 청문관에게 청문회로부터 영업일 기준 오(5) 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청문회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권리.
12. 청문회의 서면 기록 혹은, 선택에 따라, 전자 기록 혹은 축어록을 가질 권리.
13. 사실 및 결정에 대한 서면 혹은, 선택에 따라, 전자 판결을 해결 세션 기간 이후 45일 이내에 얻을 권리. 이는 AU 혹은 청문관이 당사자 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기간의 구체적인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4. AU 혹은 청문관에 의해 내려진 최종 결정의 시행에 대한 권리. 이는 당사자 중 한 명이 관할 주 법원 혹은 미국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외됩니다. 만약 한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양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항소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현재의 교육 상의 배치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모든 항소가 완료되기 전까지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21 / 39

결정에서 요구된 모든 수정 및 보정적인 행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 AU 혹은 청문관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AU 혹은 청문관의 결정에 대해 민사 소송을 주 법원 혹은 연방 법원에 제기할 권리.
16. 기관과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문회와 항소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가 현재의 교육 상의 배치를 그대로 따르게 할 권리. 징계 절차 및 징후 결정에 의거한 배치에 대한 항소에 대해, 또는 학교 시스템의 입장에서 학생의 현재 배치 상태를 유지할 경우 그 학생 혹은 다른 이에게 부상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권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소 중에, AU 혹은 청문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징계 규정 혹은 연방법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자녀는 잠정적인 대안 교육 환경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 및 주 혹은 학교 시스템이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7. 만약 적법 절차 불만이 공립학교로의 최초 입학 지원을 포함할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립 학교 프로그램에 자녀를 배치할 권리.

참조: 자녀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는 학교 시스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주 불만 혹은 적법 절차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미국 지방 법원은 승소 당사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도록 판정할 수 있습니다. 승소 당사자는 학부모, SEA, 또는 적법 절차 불만 혹은 민사 소송의 해결의 일부분으로서 지역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SEA 혹은 지역 시스템에 부여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전은 특정 지침에 따라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학부모의 변호사는 경솔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근거 없는 불만 혹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는 소송이 명백하게 경솔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근거가 없어진 이후에도 소송 진행을 지속할 경우, 공공 기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의 적법 절차 불만 혹은 이에 따른 민사 소송이 그 어떠한 부적절한 목적(예를 들면 모욕감을 주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발생시키거나, 필요하지 않은데도 소송의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을 경우, 학부모 혹은 학부모의 변호사는 공공 기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법적 및 행정 소송 절차 및 서비스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학부모에게 제공된 서면 해결 제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법원은 지불 보전을 판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해결 제안이 민사 소송 연방 규칙 제68조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행정적 청문회의 경우 청문회가 열리기 10일 이전의 어느 때라도 제공된 경우.
 - b. 해결 제안이 10일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c. 학부모가 최종적으로 받은 구제가 해결 제안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법원 또는 행정 청문관이 판단할 경우. 그러나, 해결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하게 정당화되었을 경우
학부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상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IEP 팀 회의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회의가 행정적 소송 절차 혹은 사법적 행위 혹은 주 재량에 의한 중재 세션의 결과로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5. 해결 세션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재

중재는 IDEA와 관련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 학교 시스템 혹은 그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서라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1. 중재 과정 중에는 그 어떤 당사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중 하나가 변호사, 다른 대표자, 혹은 고문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중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중재는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지연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중재는 적절한 시기에 조율되어야 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편리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중재는 공평하며 주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선택되고, 자격을 갖추었으며 훈련을 거친 중재자에 의해 진행됩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24 / 39

6. 중재 중 논의된 사항은 비밀에 부쳐지며 중재 이후의 모든 적법 절차 청문회 혹은 민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 만약 분쟁이 중재 과정에서 해결된 경우, 당사자들은 해결책을 명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참조: 해결 세션에서의 합의, 중재 과정에서의 합의 및 적법 절차 결정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 주 법원 혹은 미국 지방 법원을 통해 강제될 수 있습니다.

참조: 모든 당사자는 또한 해결 합의, 중재 합의, 혹은 적법 절차 결정이 당사자들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주 불만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교육부가 주 불만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서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평가: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의심될 경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보통 “재평가” 라는 용어가 쓰임)는 또한 자격이 있으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 현재의 교육적 필요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자녀에 대한 평가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거절에 대한 설명 및 자녀가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법 절차 청문회의 자격이 있다는 설명이 포함된 사전 서면 통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와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충분하고도 개별적인 평가를 받을 권리.

2. 의심되는 장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최소 한 명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평가를 받을 권리.
3.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권리.
4.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진행하는 적절한 시험을 거칠 권리.
5.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적절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결정하는 데 다양한 평가 도구 및 기타 다른 요소를 동원하여 관련된 기능적, 발달적, 학술적 정보를 수집할 권리.
6. 적격성 및 적절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한 개 이상의 평가 혹은 데이터를 얻을 권리.
7. (자격이 있는 검사관에 의해 시행된) 기타 다른 사적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 및 해당 정보가 자녀의 장애 여부 및 자녀의 교육적인 필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권리.
8. 평가를 자녀의 모국어 혹은 소통 수단으로 받을 권리.
9. 최소 삼 년에 한 번 재평가를 받을 권리.
10. 부모 혹은 자녀의 교사가 요청할 경우 삼 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을 권리. 그러나, 재평가는 부모 및 학교 시스템이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일 년에 한 번 이상의 빈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11. 학부모 동의를 얻은 지 달력상 기준 60일 이내에 최초의 평가를 받을 권리. 이는 의뢰가 학년도 종료 3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이거나 여름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a. 학교 시스템 내 교사들의 대부분이 계약 상태가 아닌 여름 방학 기간은 평가를 위한 6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스템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 사항은 아닙니다.
 - b. 학생이 재학일 중 오 일 연속 등교하지 않는 휴일 기간 및 다른 상황은 6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한 휴일 기간의 앞뒤에 있는 주말도 포함합니다.
 - c. 여름 방학 기간이나 다른 휴일 기간 중에 만 3세가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적격성 결정 및 IEP(적절한 경우)를 세 번째 생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12. 다음을 바탕으로 최초 결정을 위한 적격성 결정을 받을 권리. (1) IDEA가 정의한 바에 따른 장애의 존재 및 (2)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에 대한 문서.
13.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60일간의 최초 평가 기간의 완료 시 혹은 적격성 판정 회의에서 평가 보고서 및 적격성 문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 가장 이상적으로는 최초 평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받을 권리.

참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존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새로운 의뢰가 최초의 평가로 여겨져야 합니다.

최소 제한 환경:

“최소 제한 환경”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육상 적절한 최대의 환경에서 장애물 없이 또래가 있는 환경에 머무를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학생은 저마다 다르며 IEP 팀은 제공될 특수 교육 서비스의 환경을 결정합니다. 학생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은 상태로 일반 학급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지원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 환경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예외입니다.

최소 제한 환경과 관련하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IEP 팀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최대의 환경에서 자녀가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
2. 특수 학급 혹은 별도의 학교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자녀가 정규 교육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권리. 장애의 성질이나 심각성으로 인해 일반 학급에서의 보충 지원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학생을 일반 학급 환경에서 이전시켜야 합니다.
3. 연속적인 대안적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제외가 최소한의 제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할 권리.
4. 자녀가 학교 재학일의 대부분을 일반 학급에 배치된 상태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학습 도움실 및 순회 지도와 같은 보충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자녀의 IEP가 기타 다른 조정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자녀가 비장애 학생이었을 때를 가정한 상태에서의 학교 내 배치에 따라 자녀가 배치되도록 할 권리.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28 / 39

6. 적절한 최대 범위 안에서 자녀가 필요한 만큼 식사, 휴식, 상담, 체육 및 특수 이익 집단과 같은 비학구적이며 비교과적인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권리. 학교 시스템은 각 장애 학생이 학생의 IEP 팀에 의해 결정된 보충 지원 및 서비스를 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및 서비스는 자녀가 비학구적인 환경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고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대리 부모:

“대리 부모”란 학교 시스템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식별할 수 없거나 주의 피보호자거나 부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지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만약 학생이 주의 피보호자인 경우, 대리 부모는 대안적으로 학생의 사례를 감독하는 판사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대리 부모는 IDEA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만약 학생이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 법률(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42 U.S.C. § 11434a(6)) 725(6)에 의해 정의된 동반인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지역 시스템은 그러한 요구 조건에 따라 대리 부모를 지정해야 합니다.
3. 학생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 30일 내에 대리 부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학교 시스템은 학생의 대리 부모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 및 학생에게 대리 부모를 지정하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29 / 39

대리 부모는 식별, 평가, 학생의 교육 배치 및 학생에 대한 FAPE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생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대표되는 학생의 이익과 상충되는 개인적 혹은 전문적 이익을 가지지 않을 것.
2. 학생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조지아주 교육부, 지역 시스템 또는 기타 학생의 교육이나 돌봄에 포함된 기관의 직원이 아닐 것.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 배치:

학교 시스템이 학생에게 FAPE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및 학부모가 학생을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하도록 선택한 경우, IDEA는 학교 시스템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의 사립 학교 혹은 시설 교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사립 학교가 위치한 곳의 학교 시스템은 사립 학교에 배치된 학생과 관련하여 IDEA의 조항에 의거해 필요 사항이 명시된 학생 인구에 해당 학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만약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을 비영리 사립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 등록시킨 경우, 사립 학교가 위치한 곳의 학교 시스템은 해당 학생을 연방 기금의 비례적 지원 혹은 보상의 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된 상황에 따라 학생이 학부모에 의해 사립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 등록한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0 / 39

2. 만약 기존에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바 있는 장애 학생이 FAPE 제공에 대한 비동의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동의 혹은 의뢰 없이 학부모에 의해 사립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 등록한 경우, 법원 혹은 ALJ 혹은 청문관은 학교 시스템에게 그러한 등록 비용을 학부모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이 그러한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적절한 때에 학생이 FAP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며 사립 학교로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법원 혹은 ALJ 혹은 청문관이 판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위 (2)번 문단에 설명된 모든 배상에 대한 비용은 다음의 경우 삭감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a. 공립학교의 등록 취소 이전에 학부모가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팀 회의에서 학교 시스템이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에 대한 거절을 학부모가 IEP 팀에 통지하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통지는 학부모의 우려 사항 표현 및 공공 비용을 사용한 사립 학교 등록의 의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 b. 학생이 공립학교 등록 취소를 하기 영업일 기준 최소 10일 이전에,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에 대해 학부모가 거절한다는 서면 통지를 학교 시스템에 하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통지는 학부모의 우려 사항 표현 및 공공 비용을 사용한 사립 학교 등록의 의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 c. 학생이 공립학교 등록 취소를 하기 전에, 학교 시스템이 평가에 대한 적절하며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진술과 함께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였으나 학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도록 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1 / 39

- d. 학부모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법적인 차원의 비합리성이 발견된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위 (3)번 문단과 관련해 학부모가 통지를 하지 못해도 배상이 삭감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 a. 학교가 학부모의 통지를 막았을 경우.
 - b. 학부모가 권리에 대한 통지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 c. 통지 요구를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 경우.
5. 다음의 경우에는 위 (3)번 문단과 관련해 학부모가 고지를 하지 못해도 법정 혹은 ALJ 혹은 청문관의 재량에 따라 배상이 삭감되거나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학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글을 쓰지 못할 경우, 혹은
 - b. 통지 요구를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심각한 감정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 경우.

장애 학생 징계 절차:

교직원은 연속해서 십(10) 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하는 장애 학생을 현재의 배치에서 제외시켜 적절한 잠정적인 교육 환경, 다른 환경으로 옮기거나 학생의 IEP 팀에 자문하지 않고 정확시킬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또한 별개의 품행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십(10) 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제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는 배치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현재의 배치에서 연속해서 혹은 연속하지 않고 같은 학년도의 재학일 중 총 십(10) 일간 제외된 경우, 학교 시스템은 그 학년도 중 제외일 이후 언제든지 다른 환경에서라도 학생에게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IEP에 제시된 목표 충족을 향해 나아가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품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애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려는 결정으로부터 십(10) 일 이내에(십 일 미만의 제외 및 배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시스템,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구성원(학부모 및 학교 시스템에 의해 결정됨)은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사항은 IEP, 교사 관찰 기록 모두 및 학부모에 의해 제공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는 다음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1.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야기되었는지, 혹은 학생의 장애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2.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IEP를 시행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인지의 여부.

만약 학교 시스템, 학부모 및 관련 IEP 구성원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결정하면, 문제의 행위는 학생의 장애 징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의 행위가 IEP를 시행하지 못한 학교 시스템 실패의 결과인 경우, 학교 시스템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라고 결정된 경우, IEP 팀은 반드시 학생을 위해 기능적 행동적 평가(FBA)를 시행해야 하며(혹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점검), 행동적 개입 계획(BIP)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혹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점검 및 수정). 이는 그러한 행동을 강조해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학생은 제외되었던 배치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 및 학교 시스템이 BIP 수정의 일환으로 배치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만약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관련 징계 절차가 비장애 학생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이 다음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a. 비록 다른 환경에서지만, 학생이 기본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IEP가 제시한 목표 충족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경우, 그리고
 - b. FBA 및 품행 규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어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행동적 중재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을 적절하게 받아야 할 경우.
1. 만약 자녀가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유 혹은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학교 혹은 학교 행사에서 판매 혹은 이에 대한 호객 행위를 하거나, 학교에서, 교내에서, 혹은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물리적 상해를 입힐 경우, 학교 시스템은 자녀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적절한 잠정적인 교육 환경 혹은 다른 환경으로 옮기거나, 재학일 10일 이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정학(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 범위 한에서), 혹은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4 / 39

- b. 비장애 학생이 따라야 할 징계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적절한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이동하되, 문제의 행위가 장애의 징후였다는 여부에는 상관없이 45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이동.

대안적 교육 환경은 IEP 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2. 교직원 은 배치에 대한 변경이 적절한지 결정할 때 사건에 따라 특유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ALJ 혹은 청문관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IEP가 결정한 적절한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자녀의 배치에 대한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ALJ 혹은 청문관이 현재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자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리고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이 (4)번 문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4. 이 섹션의 (1)번 혹은 (4)번 문단에 따라 자녀가 배치된 모든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은 자녀가 다음을 계속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야 합니다.
 - a. 비록 다른 환경이지만 일반 커리큘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IEP가 제시한 목표 충족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함.
 - b. 문제의 행위를 해결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 설계된 FBA 및 BIP의 서비스와 변경 사항을 적절하게 받기 위함.

5. 만일 부모가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 혹은 장애 징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1)번 문단 (b) 및 (3)번 문단에 묘사된 바와 같이 징계 행위와 관련하여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자녀는 AIJ 혹은 청문관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1)번 문단 (b) 및 (3)번 문단에 제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 중 빠른 날짜까지 잠정적인 대안적 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주 혹은 학교 시스템이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문회가 요청된 후 재학일 기준 20일 이내에 이러한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가 열려야 하며 청문회 이후 재학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청문회가 요청된 이후 칠(7) 일 이내에 해결 세션 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 요청 이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적법 절차 청문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것을 학교 시스템이 알고 있었을 경우, 그 학생은 본 통지문에 설명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 학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이 장애 학생일 가능성을 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관, 행정 직원 혹은 학생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 사항을 표출한 경우.
 - ii. 학부모가 IDEA에 의거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과 관련된 평가를 요청한 경우, 혹은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6 / 39

- iii. 학생의 교사 혹은 다른 학교 시스템 교직원이 학생의 행동 패턴에 대한 특정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학교 시스템의 특수 교육 책임자 혹은 다른 학교 시스템의 감독 인원에게 표출한 경우.
- b. 학교 시스템은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이 장애 학생일 가능성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평가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혹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혹은
 - ii. 학생이 평가를 받았으나 IDEA에 의거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 학생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권리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담당자 또는 조직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역 학교 시스템의 특수 교육 책임자.
2. 조지아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지원 및 서비스과(Division for Special Education Supports and Services at the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주소: Suite 1870, Twin Towers East, Atlanta, Georgia 30334-5010. 전화번호는 (404) 656-3963입니다.
3. 지역별 조지아 학습 도움 시스템(GLRS) 센터.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Special-Education-Services/Pages/Georgia-Learning-Resources-System.aspx>에서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에 대한 규정은 조지아 교육부

웹사이트(<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Special-Education-Services/Pages/Special-Education-Rules.asp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8 / 39

특수 교육 법률 지원 제공자

조지아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Georgia Legal Services Program)

조지아 변호사 협회 공익 활동 프로젝트

주 변호사 협회 본부

104 Marietta Street, N.W., Suite 100

Atlanta, GA 30303

404-527-8762

1-800-334-6865

애틀랜타 법률 지원 협회(Atlanta Legal Aid Society)

<http://www.atlantalegalaid.org/>

귀넷 사무소:

678-376-4545

조지아 옹호 사무소(Georgia Advocacy Office)

www.thegao.org/

150 E. Ponce de Leon

Avenue Suite 430

Decatur, Georgia 30030

404-885-1234

800-537-2329

조지아주 교육부

Richard Woods, 주 교육감

2020년 3월 24일 업데이트됨

페이지 39 / 39